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전년동기대비
FTA 특혜	765	714	363	207	△4.2
비특혜	18	16	6	3	-
소계	783	730	369	210	△4.1

2. FTA 협정별 검증요청 현황

FTA 체결상대국 중 주로 튀르키예, EU, 인도, 아세안 등에서 검증요청이 집중

3. 검증요청 사유

1) 주요 요청사유

주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 중

2) 협정별 요청사유

튀르키예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의심”을 이유로, EU는 “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을 이유로, 아세안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FTA 협정별 특성에 따라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 하단의 “Ⅲ.협정별 주요 검증동향”을 확인해 검증 대응 시 활용

Ⅲ. 협정별 주요 검증 동향

1. 한-튀르키예 FTA

1) 요청 사유

튀르키예는 FTA 체결국 중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국가로 주로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 요청

2) 요청 품목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 섬유류(직물) > 기계류(금속공작기계)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 국내 수출 섬유제품에 대한 검증 결과, 역외산 원사를 이용해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등 한-튀르키예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위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섬유제품 수출 시 사전에 반드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 튀르키예의 경우 검증 결과가 ‘불충족’으로 화신되면, 특혜 배제뿐만 아니라 수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 요망

2. 한-EU FTA

1) 요청 사유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으로 최근 3년간 27개 EU회원국 전체로부터 다양하게 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신고서 진위 여부,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으로 검증을 요청

2) 요청 품목 - 섬유류(직물) > 기계류(전기자전거)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 ⇒ EU 각국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번호 조회 시스템**(관세청 FTA포털 內)을 활용하여 국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유효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음
 - ⇒ 최근 한-EU FTA 관련하여, 미인증수출자가 C/O를 발급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출자가 C/O를 발급하는 등 **인증수출자 관련 C/O 부적정 발급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 ⇒ 따라서, EU로의 수출물품에 대해 C/O를 발급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한 후 발급 필요
 - ①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인증유효기간 만료 여부
 - ②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유효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보유 여부
 - ③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였는지 여부
- [예시]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 수출물품의 HS 세번번호 오기재 등**

3. 한-인도 FTA

1) 요청 사유

2021년 인도의 원산지기준 심사 강화 조치 이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2) 요청 품목 - 전자전기제품(통신기기 부품)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 기계류(공구, 펌프 등)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 ⇒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 특히 인도 관세당국은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출물품의 부가가치 계산과 관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 인도 관세당국은 검증 요청 시 제조원가, 제조공정 등 **업체의 비밀취급자료를 상당수** 요구하는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정형화된 질문지(Questionnaire)** 작성을 함께 요청 중

4. 한-아세안 FTA

1) 요청 사유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최근 3년간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 4개 회원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용 기재 오류(C/O와 인보이스 간 내용 상이 등)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 최근 3년간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검증 요청 중 태국의 검증요청이 대다수

2) 요청 품목 - 화학공업제품(화장품) > 철강금속제품(관연결구) > 기계류(건설기계 부품)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재사항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
 - ⇒ 태국 관세당국은 특히 물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기에, 태국으로 수출 시 해당 물품의 수입국 HS세번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
- ※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

5. 기타 FTA

1) 요청 사유

튀르키예, EU, 인도, 아세안 등 수출검증 요청 건수 상위 4개국 외 기타 FTA 체결국의 검증요청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주로 한-중국 FTA, RCEP 협정 적용과 관련해 검증요청이 접수

2) 요청 품목 - 기계류(중고자동차) > 광산물(석유제품) > 화학공업제품(화학비료, 염료 등)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 RCEP 협정의 경우 역내 누적 등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이 타 협정에 비해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비특혜 원산지검증

1) 요청 사유

비특혜 원산지검증은 EU, 튀르키예 측의 요청이 대다수이며, 수입국 내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 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고자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2) 요청 품목 - 철강금속제품(철강관)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 섬유류(직물)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전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안내

[붙임2]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조민지 관세사

T 02-6011-3098
E mjcho@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